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
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padding: 2px;">           내 삶을 바꾸는  <b>도시재생 뉴딜 로드맵</b> </div>		배포일시	2018. 3. 30.(금) / 총 2매(본문2)
<b>담당 부서</b>	자동차 운영보험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이상일, 사무관 홍일산, 주무관 박정길 • ☎ (044) 201-3856, 3857
<b>보 도 일 시</b>		2018년 4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침수·대형사고 차량 중고차시장 불법유통 원천 봉쇄한다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 시행...영업정지·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4월 1일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한다.
  -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,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하여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.
-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,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(전부손해)처리 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데,
  -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국민 안전 위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.


□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,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\*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하였는지 확인·추적한다.

\*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 달 내에 폐차말소를 하여야 함

\*\* 폐차말소된 차량은 국내 재등록·재유통이 원천 차단됨

○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,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유통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하여 전손 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 경공누리 공경자적을 자유이용하라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홍일산 사무관(☎ 044-201-38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